

-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보조금 -

#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예 산 군

# 목 차

- 감사실시 개요
- 감사성과
-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
- 처분지시서

-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

# 운영 보조금 집행내역 감사 결과

##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 2015. 7. 8(수) ~ 7. 10(금) / 3일간
- 감사범위 : 2014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보조금 집행내역
- 감사반 : 2명 (감사팀장 외 1명)
- 감사중점사항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세출·물품·계약의 적법처리 여부

## 감사성과

- 행정상 조치

(단위 : 건)

지 적 사 항					제도개선	우수사례	비 고
계	시정	개선	주의	권고			
9	2	-	4	3	-	-	

- 재정상 조치

(단위 : 천원)

계	추 정	회 수	감 액	비 고
2건/2,451	-	2,451	-	-



#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NO. 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주민복지실	2014	시정	회수	2,221,322원	

## 【제 목】 : 정보화강사 퇴직금 지급 부적절

### 가. 현 황(처리내용)

(단위 : 원)

세출과목	적 요	성 명	근로기간	지급일자	지급금액	비 고
퇴직연금	정보화강사 퇴직금	◆◆◆	2013. 8. 1 ~ 2015. 1. 1	2015.1.16	2,221,322	

### 나. 위법부당 내용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그런데도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면서 충청남도에서 지원한 강사보조금에 해당하는 교육기간 (10개월)을 초과하는 1년 5개월간 계속 정보화교육강사를 근로하도록 하면서 퇴직금에 대한 예산을 별도 준비하지 않았으며, 정보화강사 퇴직시 예산군보조금인 직원퇴직연금 잔액 중 2,221,322원을 정보화강사 퇴직금 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다. 처분지시

- 정보화강사 퇴직금으로 지급된 2,221,322원을 회수하여 주시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주민복지실	2014	주의			

## 【제 목】 : 2015년 예산군 신년교례회 등록비 지급 부적절

### 가. 현 황(처리내용)

(단위 : 원)

세출과목	적 요	거 래 처	지급일자	지급금액	비 고
조사연구 사업비	2015년 예산군 신년교례회 등록비	예산문화원	2014.12.24	160,000	

### 나. 위법부당 내용

-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제64조(재무회계관리)에 따르면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협회비 등의 부담금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그런데도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15년 예산군 신년교례회 등록비를 납부하면서 일반운영비가 아닌 직원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에 지급하여야 할 조사연구사업비에서 16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

### 다. 처분지시

-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NO. 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주민복지실	2014	시정	회수	230,000원	

## 【제 목】 :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절

### 가. 현 황(처리내용)

(단위 : 원)

세출과목	적 요	장 소	참석일자	지급금액	비 고
관외출장여비	충남장애인복지관 근무자 한마음대회	보령시	2014.11.8	230,000	23명

### 나. 위법부당 내용

-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제49조(국내·외 출장)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 따르면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처리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그런데도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전출장명령 없이 2014. 11. 8(토) 보령시에서 개최된 충남장애인복지관근무자 한마음대회에 23명의 직원이 참가하고, 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비 2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다. 처분지시

- 기지급된 출장수당 230,000원을 조속히 회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NO. 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주민복지실	2014	주의			

## 【제 목】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부적절

### 가. 현 황(처리내용)

(단위 : 원)

세출과목	적 요	당초예산액	집 행 액	부족분	비 고
급 여	처우개선비	30,306,000	37,346,290	7,040,290	

### 나. 위법부당 내용

-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제70조(예산의 전용)에 의하면 관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의 전용은 관할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관의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그런데도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14년도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함에 있어 당초 도에서 보조된 30,306,000원의 예산이 모두 집행되었음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예산전용에 대한 사전절차 없이 2014년 10월 ~ 12월 부족분 7,040,290원을 군보조 복지관 제수당 예산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다. 처분지시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NO. 5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주민복지실	2014	주의			

## 【제 목】 : 유관기관 전달 화분구입비 지급 부적절

### 가. 현 황(처리내용)

(단위 : 개, 원)

세출과목	적 요	수 량	지급일자	지급금액	비 고
업무추진비	감독기관 인사이동 축하 화분 구입	4	2014.1.27	200,000	
	예산군공무원 인사발령 축하 화분구입	5	2014.7.18	250,000	

### 나. 위법부당 내용

-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제64조(재무회계관리)에 따르면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재무회계 관련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에서 축하·부의금품 등을 지급 할 수 있는 업무 유관기관은 현재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그런데도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14년도 예산군 공무원 인사이동시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축하 화분 9개를 구입하여 전달한 사실이 있음

### 다. 처분지시

-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NO. 6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주민복지실	2014	주의			

## [제 목] : 명절선물 구입비 지급 부적절

### 가. 현 황(처리내용)

(단위 : 개, 원)

세출과목	적 요	품 목	수량	지급일자	지급금액	비고
업무추진비	운영위원 명절선물 구입	인삼세트	9	2014.1.27	450,000	
	장애인 단체장 명절선물 구입	인삼세트	3	2014.1.27	150,000	

### 나. 위법부당 내용

-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제64조(재무회계관리)에 따르면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 용도와 물품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그런데도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업무추진비로 2014년도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운영위원 및 단체장에게 전달하면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 다. 처분지시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권 고 사 항

연번	제 목	권고사항	비고
1	간담회 급식참석자 목록 기재	유관기관 회의 및 각종 위원회 간담회 후 급식참석자 목록을 기재하여 지출서류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람	
2	물품구입시 관내업체 선정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물품 구입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하면 관내업체에서 구입하여 주시기 바람	
3	행사운영비 예산계정 별도 수립	개관기념행사 예산이 사회심리 재활사업비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 행사관련 예산은 별도 행사운영비 예산계정을 수립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람	